

자유회전정기예금 특약 일부개정약관

자유회전정기예금특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특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특약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-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세금우대의 적용) 이 예금은 세금우대저축, 생계형저축,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.	<삭 제>